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1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0.

발 의 자 : 이강일 · 이인영 · 김남근
이훈기 · 손명수 · 김우영
김문수 · 박홍배 · 민병덕
강준현 · 허영 · 황운하
박상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매체를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정하고 있음.

한편,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의 유료타겟 광고는 지역·연령·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의 유권자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. 반면에 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서의 광고는 허용하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유료 광고는 허용하지 않아 선거운동 수단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특히 현행법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 메시지 발송은 허용하면서도,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특정 지역의 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광

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후보자 등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선거운동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82조의7제1항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2조의7제1항 중 “인터넷홈페이지”를 “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2조의7(인터넷광고) ① 후보자 (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 당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인터넷언론사의 <u>인터넷</u> <u>홈페이지</u> 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(이하 “인터넷광고”라 한 다)를 할 수 있다.	제82조의7(인터넷광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인터넷홈</u> <u>페이지</u>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<u>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회관계망</u> <u>서비스</u> ----- ----- -----.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